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삼성증권㈜

2. 조치일 : 2019. 12. 4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관	○ 경영유의사항 (2건) ○ 개선사항 (3건)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신탁계약 협의보수 적용 기준 보완 및 준수 강화

□ ‘신탁상품 보수 가이드라인’에 상품별 신탁보수 책정 시 할인 폭에 따라 전결권자를 달리 정하도록 ‘상품 보수율 조정 프로세스’를 마련하고 있으나,

○ 보수 운용기준이 일부 미흡하고, 운용 과정에서 협의보수 적용 사유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, 협의보수 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

○ ‘신탁상품 보수 가이드라인’에 신탁계약 협의보수 적용 관련 최대 조정률(할인폭) 및 조정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고, 협의보수 적용과정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

(2) 신탁부문에 대한 교육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 강화

□ ○○○○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탁부문에 특화된 교육은 부족하였고,

○ ○○○○팀은 ◉◉팀으로부터 자전거래 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, ◉◉팀 자체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거나 문제점 확인이 불가하여 금번 검사과정에서 다수 법규위반 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

○ 금번 신탁부문 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탁부문에 대한 내부교육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선사항

(1)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(비상장주식) 서식 개선

□ 금융투자협회의「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」에 따르면, 비상장주식 투자시 운용자산 설명서에 발행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(비상장주식)에 발행회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

○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(비상장주식)에 발행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발행회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시기 바람

(2) 신탁상품 보수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개선

□ 2017.1월부터 ‘신탁상품 보수 가이드라인’을 운영함에 있어 신탁보수 수준을 ‘서비스수준’, ‘위험자산 비중’, ‘상품난이도’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나 보수 차등화 기준 및 고려 요소 등 구체적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

○ 신탁상품 보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

(3) 자사주신탁 주식배분 오류 방지 방안 미흡

□ ◎◎◎◎◎◎ 자사주 신탁계약에 따라 2016.7.4. ◎◎◎◎◎◎ 자사주를 매수하였으나, 이를 ▣▣▣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오류 배분한 후, 2016.7.6. 동 오류 건을 발견하여 장외거래 형태로 ▣▣▣ 자사주신탁계약에서 ◎◎◎◎◎◎ 자사주신탁계약으로 다시 배분하여 처리한 바 있으므로

○ 자사주신탁계약의 경우에 위탁자 종목이 아닌 종목은 편입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